어선청년임대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.

| 담당기관 | 담 당 과 | 담 당 자 | 전화번호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부 | 어업정책과 | 과 장 임태훈 사무관 김현정 | 044-200-5510 044-200-5518 |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을 청년에게
 임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입 촉진

2. 근거법령

- 「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·소비자 등의 책임)
- ㅇ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제28조의2(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| 성과지표 | 2025년 | 최근 4개년 실적 | | | 적 | 지표산출 | 측정방식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목표치 | 21년 | 22년 | 23년 | 24년 | 시기 | ₹% % 7 | |
| 청년어업인 양성 (단위: 명) | 25 | - | 6 | 12 | 16 | 연말 |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 관리대장 | |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합 계 | 1,125 | 1,125 | 3,315 | 4,375 |
| - 국 비 | 1,125 | 1,125 | 3,315 | 4,375 |
| - 지방비 | - | - | - | - |
| - 자부담 | - | - | - | - |

Ⅱ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ㅇ 보조사업자 : 한국수산자원공단

2.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: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
-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: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

3. 지원대상

- ㅇ 보조사업자 : 한국수산자원공단
- ㅇ 간접보조사업자 : 청년 어업희망인(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(어선임대료 지원금)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어업희망인이 임차함에 따른 어선임대료의 50%(월 최대 250만원 한도) 및 기타 지원 등
- (청년 어업희망인 교육) 청년 어업희망자의 교육 및 우수어업인 멘토링, 경영 컨설팅 등에 관련된 제비용
- ㅇ (기타 사업운영비) 어선청년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운영비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ㅇ 지원조건 : 국비 50~100%
 - * 어선임대비 지원의 경우 국비 50%, 청년어업인 자부담 50%
- 사업의무량 : 연안어선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25건(계약유지 포함) 및 청년 어업희망인 교육 등 사업관리
- 기타조건 : 어선임대료의 50%(월 최대한도 250만원)를 지원하고, 지원금이 남은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사업량 증가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ㅇ 지원한도액 : 어선 한 척당 월 최대 250만원(국비 50%) 임대비 지원

7. 중요재산 관리

ㅇ 해당사항 없음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절차의 개요

사업계획수립

(해 수 부)

ㅇ사업 추진계획 수립

(보조사업자)

ㅇ해당없음

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

(해수부)

ㅇ사업 시행지침 시달

(보조사업자)

○세부계획 수립·제출

어선 임대차 계약 체결

(해수부)

ㅇ해당없음

(보조사업자)

ㅇ청년어업인에게 임대용어선 매칭

(청년어업인)

o청년어업인과 선주 임대차 계약 체결

사업자 공모단계

(해 수부)

○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 ○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

(보조사업자)

ㅇ제안서 제출

자금배정 단계

(해수부)

○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(해수부→보조사업자)

(보조사업자)

ㅇ보조금 교부신청

임차료 납부 및 어획량 보고

(해수부)

ㅇ해당없음

(보조사업자)

ㅇ임대인에게 임차료 50% 지급 ㅇ청년어업인의 어획보고사항 관리

(청년어업인)

ㅇ매월 임차료 지급, 어획량 및 어획 비용 등 보조사업자에게 보고

사업자 선정

(해 수부)

ㅇ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

(보조사업자)

ㅇ해당없음

사업수행어선 및 청년어업인 모집, 대상자 선정, 교육

(해수부)

ㅇ해당없음

(보조사업자)

ㅇ임대용어선 및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, 선정자 통보 및 교육

사업 이행 점검

(해수부)

○보조사업 집행현황, 정산결과 등 연 1회이상 점검

(보조사업자)

○ 사업결과보고서 작성,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수부에 보고

2. 사업계획수립 단계

해양수산부

o 해양수산부는 정책 방향 및 주요지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함)에 통보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ㅇ 공단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
- 사업계획서에는 청년 어업희망인(이하 "청년어업인"이라함) 모집 및 교육 방안, 임대용 어선모집 방안 및 청년어업인의 어업활동 지원방안,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포함

(어선임대운영위원회)

- ㅇ (역 할) 어선임대사업 사업시행관련 계획 및 발전방향 자문 등
- o (구 성) 어선임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를 참고하여 공단에서 추진
 - 위원 구성 :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 어선임대 담당 본부장으로 함
 - 당연직 위원 :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어선청년임대사업담당, 어촌 어항과 귀어귀촌담당으로 함
 - 위촉직 위원: 위촉직 위원은 7명 내외로 하며 어업·어촌·수산경영·법률· 어선거래 등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장 가능
 - * 어선거래분야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업무 담당부서 실장(또는 팀장)으로 정함
- o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 및 행정 사항은 공단에서 처리

해양수산부

ㅇ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

3. 사업신청단계

<임대용 어선의 모집공고>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ㅇ 공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임대용어선 모집 공고문 작성
- ㅇ 공고문은 해양수산부, 각 시도 및 시군구,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
- 공고문에는 모집 대상 어선의 업종 및 지역, 어선의 사양, 임대차 희망가격, 임대차 가격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 - 업종 : 연안복합, 연안자망, 연안통발

 공단은 모집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해 어선상태를 확인하고 어선주가 제시한 임대차 가격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임대용 어선 모집 현황 작성

<청년어업인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정 및 교육>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ㅇ 공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문 작성
- ㅇ 공고문은 해양수산부, 각 시도 및 시군구,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
- 공고문에는 지원자격 및 임대 가능 대상 어선의 업종 및 지역, 임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 - 지원자격 :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
 - 임대가능어선 : 사업 대상 시도(시군구) 소속 연안복합·통발·자망 어선
 - 준수 의무사항 : 임대어선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, 어획량 및 어업비용 보고 등 명시
- ㅇ 모집 공고 시 청년어업인으로부터 어업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
- ㅇ 모집이 완료된 후 공단은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 선정
- ㅇ 공단은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여, 선정된 청년어업인에 대한 관련 교육 추진
- ㅇ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관련된 제비용은 공단에서 부담

4. 사업자 선정단계

<어선의 임대차 가격 결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>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o 공단은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, 청년어업인과 계약 대상 어선을 선정
- 선정된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적정 어선 임대차 가격을 산정하고, 임대희망 어선주와 협의
- 가격 협의가 완료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주를 임대인으로 청년어업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

- 임대차 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, 임대인 (어선주)과 임차인(청년어업인),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
-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필요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
- 임차료의 50%는 임차인이, 50%는 공단이 지급하되, 공단이 지원하는 임차료의 월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
-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,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연납을 기본으로 하며, 필요 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
-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, 임차인, 공단이 각각 보유
- ㅇ 공단은 청년어업인에 대한 어선임대차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 보고
- 어선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,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, 어선보험 및 어선원 보험에 가입
 - 어선의 파손 등의 보장을 대비하여 어선보험 및 어선원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어선보험료는 공단이 지원

<청년어업인의 어획활동 지원 등>

- 청년어업인은 매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지
- ㅇ 청년어업인은 일 단위 어획량 및 어획비용 등을 공단에 통지
- o 청년어업인은 수산업법, 수산자원관리법 등 어업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 하고 임대차 계약 및 청년어업인 공고문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o 공단은 어선임대차 계약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어업인의 어구구입비 중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 - 어구구입비 지원은 11월경 예산 한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 지원하며 지원 가능액은 어구구입비의 50%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
- 공단은 청년어업인의 어획활동 컨설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어획량, 어획시기, 어획비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,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어업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
- 장단은 지역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을 체결하여 청년어업인의 어획활동 조기 정착을 지원

 공단은 청년어업인으로부터 받은 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획활동, 수산물 유통, 세무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.
 지근다를 지급 가능

<어선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추가>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장단은 어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어업인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속
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o 계약이 해지되면 청년어업인은 즉시 어선 등 목적물 일체를 임대인에게 반납 하며, 향후 이 사업을 재신청할 수 없음
- ㅇ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서 등 별도로 정함
- o 공단은 기존 청년어업인의 계약 해지 또는 예산의 증액 및 남은 예산의 활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 어선임대차 계약을 추가 할 수 있음

5. 자금배정단계

<보조금 신청 및 교부>

- ㅇ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
- ㅇ 해양수산부는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

<사업계획의 변경>

- ㅇ 사업의 중요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
- ㅇ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 공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
 -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
 - 사업 세목 간 10% 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

<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>

- ㅇ 공단은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수부에 제출
- ㅇ 집행잔액과 지급된 보조금에 의해 발생된 이자수익은 반납 조치
- ㅇ 해양수산부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확정

6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해양수산부

ㅇ 해양수산부는 어선임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수행

한국수산자원공단

- o 공단은 청년어업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들을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
- o 공단은 매월 청년어업인로부터 어획현황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, 어선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- o 공단은 청년어업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,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해수부에 보고

《제재》

해양수산부

ㅇ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

Ⅳ.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보조금 교부조건

[일반사항]

- 1. 보조사업자(간접보조사업자 포함. 이하 "보조사업자"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)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2.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합니다(www.gosims.go.kr).
- 3.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4.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.
- 5.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(계좌)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- 6. 해양수산부장관(이하 '우리부')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하며,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7.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,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8.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집행]

- 1.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 - 가.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
 - 나.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.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

- 2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(신용카드, 체크 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3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4.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,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,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, ③ 조달청 "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"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5.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, ② 공사계약 체결,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 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 리·감독(기획, 설계 등)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 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6.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, 보조금 반환, 강제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7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정산]

- 1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(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)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.
- 2.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제30조에 따라「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」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3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.

- 4.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5.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6.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.
- 7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8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, 증거서류,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,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.
- 9.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.
- 10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
 - 가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.
 - 나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,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,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]

- 1.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,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, 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,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적법·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